

준비서면

A1014

사 건 2005나 84701호

교수지위확인

원고(항소인) 김명호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피항소인, 이하 "피고"라고 합니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석명사항에 대하여

가. 학생들의 시험답안지를 교수와 학교 중 누가 보관하는지:

출석부, 과제보고서, 실험실습보고서, 시험답안지 등의 성적평가 자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피고 성균관대학 학칙(시행세칙 제24조 제4항)에 따라 피고는 학생들의 시험답안지를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한 자료(성적평가표)를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지:

피고 문서관리규정 별지 문서종별 보존기간 상 성적기록표는 보존기간이 5년이고, 피고가 확인해 본 결과 위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성적평가표

는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학생에 대한 평가 잘못을 이유로 피고 학교 측이 교수를 징계하거나
재임용을 탈락시킨 예가 있는지: 없습니다.

2006. 5. .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재 원

정 재 응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귀 중